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3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허성무 · 양부남
박민규 · 김기표 · 김승원
김남근 · 이주희 · 안태준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.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, 정신질환자,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,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· 아동학대범죄·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, 정신질환자,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).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
나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10.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

사람

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라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마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바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사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후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</u> <u>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</u> <u>있는 사람</u></p> <p>5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</u> <u>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</u> <u>중에 있는 사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나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</u> <u>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</u> <u>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</u> <u>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면</u> <u>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</u> <u>아니한 사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다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</u> <u>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</u> <u>간 중에 있는 사람</u></p> <p>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 경</u> <u>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<u>가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</u></p>

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나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

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라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

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마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바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사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